

2013년 3월 9일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문제

1. 경찰부패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3 채용 1차) - 기본서 46페이지, 네친구 22페이지

- ① 전체사회가설은 월슨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 ② 구조원인가설은 신참 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이론이다.
- ③ 썩은사과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 ④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이론으로 사회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이론이다.

정답 - ④

해설 -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이론은 구조원인가설이론이다. 사회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단계에서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이론은 전체사회가설이론이다.

2.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역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2013 채용 1차) - 기본서 67페이지, 네친구 32, 33페이지

- ① 경찰에 관한 조직법적·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외형상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 ②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 내각은 경찰을 내무아문에 창설하였으나, 곧 법무아문으로 소속을 변경시켰다.
- ③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부를 신설하였다.
- ④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법인 행정경찰장정을 제정하였다.

정답 - ①

해설 - ② 김홍집 내각은 경찰을 법무아문에 창설하였으나, 곧 내무아문으로 소속을 변경시켰다.

- ③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하였다.
- ④ 행정경찰장정은 최초의 경찰작용법이다. 최초의 조직법은 경무청관제직장이다.

3. 「경찰법」 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3 채용 1차)

- 기본서 109페이지, 110페이지, 네친구 49, 50페이지

- ①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7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②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경찰위원회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④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 ①

해설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경찰법 제5조).

4.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3 채용 1차) - 기본서 122페이지, 네친구 55페이지

- ① 권한의 위임은 경찰관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경찰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그 수임기관이 자기의 명의로 책임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권한의 위임은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없다.
- ③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④ 대리기관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신(대리기관)의 명의로 대리한다.

정답 - ②

해설 - 권한의 위임은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5. 다음은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각 ()에 해당하는 숫자의 합은?(2013 채용 1차) - 기본서 139페이지, 네친구 66페이지

- ㉠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총경 ()년이다.
- ㉡ 수사, 정보, 외사, 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년의 범위에서 계급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① 11 ② 15 ③ 16 ④ 17

정답 - ③

해설 - ㉠ 총경의 계급정년은 11년

㉡ 수사, 정보, 외사(外事), 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6.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3 채용 1차) - 기본서 55, 56, 57페이지, 네친구 27, 28페이지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 ①번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을 포함한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답 - ④

해설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 제1항).

7.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3 채용 1차) - 기본서 197,198, 199페이지, 네친구 96, 98페이지

①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임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에는 국가기관 또는 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실을 확인 후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추후 통보를 하여야한다.

④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 ③

해설 -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얻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8.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3 채용 1차) - 기본서 201, 202 페이지, 네친구 99페이지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경찰봉·최루탄 등을 말한다.

정답 - ④

해설 -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등을 말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4항). 경찰봉은 경찰장구에 해당하고, 최루탄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분사기·최루탄에 해당한다.

9. 다음은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2013 채용 1차) - 기본서 628페이지, 네친구 311페이지

- | |
|--------------------------|
| ㉠ 상습국제범죄자의 동향파악을 목적으로 발행 |
| ㉡ 사망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

- ① ㉠ - Green Notice(녹색수배서) ㉡ - Yellow Notice(황색수배서)
② ㉠ - Blue Notice(청색수배서) ㉡ - Yellow Notice(황색수배서)

- ③ ㉠ - Blue Notice(청색수배서) ㉡ - Black Notice(흑색수배서)
 ④ ㉢ - Green Notice(녹색수배서) ㉣ - Black Notice(흑색수배서)

정답 - ④

해설 - 국제수배서

적색수배서 (Red Notice)	일반형범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인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 (11 경간)
청색수배서 (Blue Notice)	피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 을 목적으로 발행
녹색수배서 (Green Notice)	상습적으로 범행 하였거나 범행할 우려가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 을 파악케 하여 그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
황색수배서 (YellowNotice)	가출인 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행 (12 승진)
흑색수배서 (Black Notice)	사망자 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
장물수배서 (Stolen Property Notice)	도난당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나 문화재에 대하여 상품적 가치를 고려하여 발행
자주색수배서 (Purple Notice)	세계 각국에서 사용된 새로운 범죄수법을 사무총국에서 집중관리하고, 이를 각 회원국에 배포하여 범죄예방과 수사자료에 활용케 할 목적으로 발행
오렌지수배서	폭발물, 테러범(위험인물)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보하기 위하여 발행 (08·10 승진, 11 경간, 09 채용)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3 채용 1차) - 기본서 206, 207, 208페이지, 네친구 102, 103페이지

- | |
|--|
| <p>㉠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의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비용으로 부담한다.</p> <p>㉣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정답 - ①

해설 -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㉔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㉕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㉖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11. 전통적 경찰활동에서 주로 경찰력의 의존해 왔던 범죄예방과 범죄진압이 한계에 이르고 범죄는 더욱 다양화, 지능화, 흉폭화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은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환경의 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자 하는 범죄예방기법이다. 다음 중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의 기본원리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3 채용 1차) - 기본서 291페이지, 네천구 139페이지

- ① 영역성의 약화 - 사적 공간의 대한 경계를 제거하여 주민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감소시킴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권리를 약화
- ② 자연적 감시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
- ③ 자연적 접근 통제 - 일정한 지역의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의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
- ④ 활동의 활성화 - 지역사회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정답 - ①

해설 - 영역성의 약화가 아니라 영역성의 강화이다.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의 기본원리**

자연적 감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가능성 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
자연적 접근통제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
영역성의 강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
활동성의 활성화 (활용성의 증대)	지역사회의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공원, 체육시설 등)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 거리의 눈 '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유지관리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

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상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로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 채용 1차) - 기본서 388, 389페이지, 네천구 178페이지

-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傍室)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① ㉠㉡㉢ ② ㉠㉡㉤ ③ ㉡㉢㉣ ④ ㉢㉣㉥

정답 - ①

해설 -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취해야 하는 조치는 ㉤㉤㉤이다. ㉠㉡㉢은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취하는 임시조치이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13.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3 채용 1차) - 기본서 437, 438페이지, 네친구 205페이지

-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 ㉡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자오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 ㉣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정답 - ④

해설 - ㉠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

- ㉡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
- ㉢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
-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14. 「형사소송법」 상 경찰수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3 채용 1차) - 기본서 359페이지

-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 ②

해설 -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15. 다음 중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상 경찰장구는 모두 몇 개인가?(2013 채용 1차) - 기본서 204페이지, 네친구 101페이지

㉠ 수갑 ㉡ 가스분사기 ㉢ 기관총 ㉣ 경찰봉
 ㉤ 유탄발사기 ㉥ 전자총격기 ㉦ 석궁 ㉧ 다목적발사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②

해설 - ㉠ 수갑 - 경찰장구

㉡ 가스분사기 - 분사기·최루탄등

㉢ 기관총 - 무기

㉣ 경찰봉 - 경찰장구

㉤ 유탄발사기 - 무기

㉥ 전자총격기 - 경찰장구

㉦ 석궁 - 기타장비

㉧ 다목적발사기 - 기타장비

*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경찰장비의 종류)**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장구 : 수갑·포승(捕繩)·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총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2. 무기 :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3. 분사기·최루탄등 :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검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타장비 :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16. 「통합방위법」 상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것과 옳게 연결된 것은?(2013 채용 1차) - 기본서 422페이지, 네천구 197페이지

㉠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 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를 말한다.
 ㉡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 ① ㉠-갑중사태, ㉡-을중사태 ② ㉠-병중사태, ㉡-갑중사태
 ③ ㉠-을중사태, ㉡-갑중사태 ④ ㉠-갑중사태, ㉡-병중사태

정답 - ②

* 통합방위사태의 유형

갑중사태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	--

을중사태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경찰청장 ×) 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병중사태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합대사령관 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

17. 다음 중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 행정처분결과에 따른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이 3년인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2013 채용 1차) - 기본서 459페이지, 네천구 216페이지

-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없이 도주한 경우 (취소된 날부터)
- ㉡ 3회 이상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취소된 날부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정답 - ④

- 해설 -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없이 도주한 경우 -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4년
 ㉡ 3회 이상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2년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없음
 ㉣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2년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3 채용 1차) - 기본서 511, 512, 515, 522페이지, 네천구 248, 250, 256페이지

- ㉠ '옥외집회'란 천장이 있고, 사방이 폐쇄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 ㉡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 ㉢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③

해설 - ㉠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19. 「보안관찰법」 상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3 채용 1차) - 기본서 574, 575, 577, 579페이지, 네천구 282, 283, 285페이지

-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 등의 자를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 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청구서 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정답 - ④

해설 - ㉠ 보안관찰법 제3조

- ㉡ 보안관찰법 제5조
- ㉢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 ㉣ 보안관찰법 제8조 제3항
- ㉤ 보안관찰법 제8조 제4항

20. 다음의 설명은 범죄인인도원칙 중 어떤 원칙에 대한 내용인가?(2013 채용 1차) - 기본서 633페이지, 네천구 313페이지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법을 적용한다.

① 쌍방가벌성의 원칙 ② 상호주의의 원칙 ③ 특정성의 원칙 ④ 유용성의 원칙

정답 - ②

해설 - **범죄인인도법 제4조(상호주의)**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

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